

정책·성과중심의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2012년 11월 29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 건 재**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주민생활국 소관

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주민생활국 소관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1월 19일 (월) 마포구청장

3. 복지도시위원회 회부일자

○ 2012년 11월 22일 (목)

4.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2011.10.15 법률 제10827호) 제127조

○ 「지방재정법」(2011.10.26 법률 제10898호) 제36조

5. 2013년도 마포구 세출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율(%)
총 계	370,515,887	330,831,784	39,684,103	12.00
일 반 회 계	320,726,000	279,281,494	41,444,506	14.84
특 별 회 계	49,789,887	51,550,290	△1,760,403	△3.41
의 료 보 호 기 금	409,120	381,000	28,120	7.38
마 포 농 수 산 물 시 장	5,274,331	7,903,342	△2,629,011	△33.26
주 차 장	44,106,436	43,204,716	901,720	2.09

6.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가.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증 감	
	예산액	구성비 (%)	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증감율 (%)
총 계	171,429,628	100.0	138,213,045	100.0	33,216,583	24.03
주 민 생 활 국	171,429,628	100.0	138,213,045	100.0	33,216,583	24.03
복지행정과	8,869,138	5.2	7,774,527	5.6	1,094,611	14.08
일자리진흥과	3,323,328	1.9	4,847,541	3.5	△1,524,213	△31.44
사회복지과	64,470,410	37.7	54,216,954	39.2	10,253,456	18.91
가정복지과	62,862,482	36.6	39,471,706	28.6	23,390,776	59.26
교육지원과	7,671,393	4.5	7,126,419	5.2	544,974	7.65
청소행정과	23,076,467	13.4	23,668,301	17.1	△591,834	△2.50
환 경 과	1,156,410	0.7	1,107,597	0.8	48,813	4.41

나. 총 사업별 예산안 현황(과별)

■ 복지행정과

(단위:천원)

분야 부문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예산액	2012년 당초예산	비 교 증 감	증감율 (%)
총 계				8,869,138	7,774,527	1,094,611	14.08
	정책사업비			8,102,829	7,076,030	1,026,799	14.51
	재무활동			578,412	532,743	45,669	8.57
	행정운영경비			187,897	165,754	22,143	13.36
사회복지 분야 / 기초생활보장 부문				3,544,932	3,083,773	461,159	14.95
	정책1/ 기초생활지원			3,544,932	3,083,773	461,159	14.95
		단위1/ 복지지원		790,560	684,624	105,936	15.47
		단위2/ 자활지원		2,754,372	2,399,149	355,223	14.81
사회복지 분야 / 취약계층 지원 부문				4,345,317	3,827,477	517,840	13.53
	정책1/ 주민생활지원			4,345,317	3,827,477	517,840	13.53
		단위1/ 주민생활지원 강화		533,739	518,413	15,326	2.96
		단위2/ 지역복지역량 제고		3,770,098	3,267,584	502,514	15.38
		단위3/ 취약계층 보호		41,480	41,480	0	0.00
사회복지 분야 / 보훈 부문				212,580	164,780	47,800	29.01
	정책1/ 국가보훈지원			212,580	164,780	47,800	29.01
		단위1/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212,580	164,780	47,800	29.01

■ 일자리진흥과

(단위:천원)

분야 부문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예산액	2012년 당초예산	비 교 증 감	증감△율 (%)
총 계				3,323,328	4,847,541	△1,524,213	△31.44
	정책사업비			3,160,951	4,685,931	△1,524,980	△32.54
	재무활동			0	0	0	0.00
	행정운영경비			162,377	161,610	767	0.47
사회복지 분야 / 노동 부문				3,160,951	4,685,931	△1,524,980	△32.54
	정책1/ 고용촉진 및 근로안정			3,160,951	4,685,931	△1,524,980	△32.54
		단위1/ 고용촉진 및 안정		3,160,951	4,685,931	△1,524,980	△32.54

■ 사회복지과

(단위: 천원)

분야 부분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예산액	2012년 당초예산	비 교 증 감	증감율 (%)
			총 계	64,470,410	54,216,954	10,253,456	18.91
			정책사업비	63,684,098	53,338,693	10,345,405	19.40
			재무활동	645,709	776,600	△130,891	△16.85
			행정운영경비	140,603	101,661	38,942	38.31
사회복지 분야 / 노인, 청소년 부문				33,108,981	29,568,236	3,540,745	11.97
			정책1/ 노인복지 증진	33,108,981	29,568,236	3,540,745	11.97
			단위1/ 노후생활지원	24,725,406	23,408,516	1,316,890	5.63
			단위2/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567,960	472,912	95,048	20.10
			단위3/ 노인 여가 프로그램 확대	238,020	211,811	26,209	12.37
			단위4/ 노인일자리 창출	4,445,100	2,972,700	1,472,400	49.53
			단위5/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3,132,495	2,502,297	630,198	25.18
사회복지 분야 / 취약계층 지원 부문				9,668,017	4,347,734	5,320,283	122.37
			정책1/ 취약계층 지원기반 조성	9,668,017	4,347,734	5,320,283	122.37
			단위1/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7,937,356	2,799,554	5,137,802	183.52
			단위2/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156,701	123,571	33,130	26.81
			단위3/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1,573,960	1,424,609	149,351	10.48
사회복지 분야 / 기초생활보장 부문				20,907,100	19,422,723	1,484,377	7.64
			정책1/ 국민기초생활보장	20,907,100	19,422,723	1,484,377	7.64
			단위1/ 기초생활지원	20,907,100	19,422,723	1,484,377	7.64

■ 가정복지과

(단위:천원)

분야 부 문	정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예산액	2012년 당초예산	비 교 증 감	증감율 (%)
총 계				62,862,482	39,471,706	23,390,776	59.26
	정책사업비			62,642,191	39,277,383	23,364,808	59.49
	재무활동			86,331	81,713	4,618	5.65
	행정운영경비			133,960	112,610	21,350	18.96
사회복지 분야 /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60,276,960	37,171,834	23,105,126	62.16
	정책1/ 영유아 및 여성복지 증진			60,276,960	37,171,834	23,105,126	62.16
		단위1/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1,890,020	149,000	1,741,020	1168.47
		단위2/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		56,437,822	35,385,269	21,052,553	59.50
		단위3/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확산		498,388	409,325	89,063	21.76
		단위4/ 여성취업및자소득한부모가족명절 격려		36,000	36,000	0	0.00
		단위5/ 건강가정 지원사업		1,414,730	1,192,240	222,490	18.66
사회복지 분야 / 노인,청소년 부문				2,365,231	2,105,549	259,682	12.33
	정책1/ 아동청소년 보호 및 권리신장			2,365,231	2,105,549	259,682	12.33
		단위1/ 아동복지증진		1,508,596	1,508,236	360	0.02
		단위2/ 청소년 보호 및 참여기반 구축		856,635	597,313	259,322	43.41

■ 교육지원과

(단위:천원)

분야 부 문	정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예산액	2012년 당초예산	비 교 증 감	증감율 (%)
총 계				7,671,393	7,126,419	544,974	7.65
	정책사업비			7,588,988	7,044,286	544,702	7.73
	재무활동			0	0	0	0.00
	행정운영경비			82,405	82,133	272	0.33
교육분야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6,124,541	5,648,399	476,142	8.43
	정책1/ 학교 교육지원			6,124,541	5,648,399	476,142	8.43
		단위1/ 교육 내실화 지원		6,062,551	5,584,409	478,142	8.56
		단위2/ 우수인재 양성		61,990	63,990	△2,000	△3.13
교육분야 / 평생, 직업교육 부문				320,532	353,555	△33,023	△9.34
	정책1/ 평생학습체제 구축			320,532	353,555	△33,023	△9.34
		단위1/ 평생학습도시 조성		320,532	353,555	△33,023	△9.34
문화 및 관광분야 / 문화예술 부문				1,143,915	1,042,332	101,583	9.75
	정책1/ 공공도서관 운영			1,143,915	1,042,332	101,583	9.75
		단위1/ 도서관 운영 및 지원		1,143,915	1,042,332	101,583	9.75

■ 청소행정과

(단위:천원)

분야 부문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예산액	2012년 당초예산	비 교 증 감	증감율 (%)
총 계				23,076,467	23,668,301	△591,834	△2.50
	정책사업비			12,652,080	12,097,315	554,765	4.59
	재무활동			22,508	0	22,508	100.00
	행정운영경비			10,401,879	11,570,986	△1,169,107	△10.10
환경보호분야 / 폐기물 부문				12,652,080	12,097,315	554,765	4.59
	정책1/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12,652,080	12,097,315	554,765	4.59
		단위1/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추진		10,365,035	9,940,086	424,949	4.28
		단위2/ 청소행정서비스 효율적관리		1,525,930	1,489,518	36,412	2.44
		단위3/ 청소시설 및 장비 확충		761,115	667,711	93,404	13.99

■ 환경과

(단위:천원)

분야 부문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 부 사 업	예산액	2012년 당초예산	비 교 증 감	증감율 (%)
총 계				1,156,410	1,107,597	48,813	4.41
	정책사업비			1,058,096	1,014,857	43,239	4.26
	재무활동			0	0	0	0.00
	행정운영경비			98,314	92,740	5,574	6.01
환경보호분야 / 환경보호 일반 부문				852,395	831,371	21,024	2.53
	정책1/ 환경보전			852,395	831,371	21,024	2.53
		단위1/ 마포의제21 실천		36,135	35,967	168	0.47
		단위2/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816,260	795,404	20,856	2.62
환경보호분야 / 대기 부문				205,701	183,486	22,215	12.11
	정책1/ 환경개선			205,701	183,486	22,215	12.11
		단위1/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205,701	183,486	22,215	12.11

하였으나 안정적인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 등의 증가보다는 국·시비보조금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재정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 역시 공무원 인건비 인상 및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가정양육수당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 및 가용재원의 감소로 기존사업의 축소 및 폐지와 신규사업 억제가 불가피하여 경직성 경비와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신규 및 증가사업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법정경비 등 필요불가피한 예산 위주로 편성 하였음.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자활촉진 및 탈수급 기반조성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4%가 증액된 23억3,333만3천원, 우리마포 복지관 토지매입 분납금(10년간 납부)은 9회분 9억8,979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은 수혜대상자 증가에 따른 가내시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인 13억1,077만 3천원 증액하였고, 마포구 용강제2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추진 중인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5억7천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노인일자리사업비는 1인 참여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전년도예산액 대비 47.6%인 13억4,040만원이 증액된 41억5,8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참여기간 연장으로 사업대상자의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예산이 2012년 8월부터

자치구별 분담비율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46억3,326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급여비는 수급자선정기준 완화 예상에 따른 가내시 시달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에 해당하는 1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영아간식비 증액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7%인 2억 297만8천원 증액하였고, 도화동주민센터 이전으로 유희시설이 된 구 청사를 활용하여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민간 이전비 등 사업비로 2억900만원을 반영하였음.

도서관 서비스 및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비는 도화동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의 증가로 3억2,726만6천원 그리고 마포구 청사내 구립도서관 설치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등 사업비 1억1,853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0 기초수급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3년간 장려금 및 매칭금을 적립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2%에 해당하는 5,076만6천원 증가된 1억 2,971만7천원 편성하였음.

2010년부터 시행된 본 사업은 2011년 2억450만원까지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의 외면 등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비가 대폭 줄었음. 그러나 2012년11월 현재 통장가입자는 신규 10명 포함 총 30명으로 2013년도에는 3년차 만기자가 13명

예상되며, 통장가입자 중 11명이 만기 전 탈수급하였는바, 사업 미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참여자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사례관리 업무지원 등을 통하여 기초수급가구가 경제적 자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하여 저소득층 생계 지원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9%에 해당하는 8억 6,245만9천원이 감소된 2억8,875만6천원 편성하였음.

2012년까지는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50%:25%:25%)보다 높게 구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가내시되었고, 매칭비율대로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었음.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역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인 1억7,878만천원이 적게 편성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한시적 생계유지 보조성격의 일자리사업은 지속가능하고 생산성있는 사업위주로 재편하고,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지역 특화자원 등을 활용, 마을기업 등으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일자리를 발굴·제안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자살률 증가와

지역내 임대아파트 주민의 연이은 자살사고로 인한 사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주민주도의 자립경영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3%인 1억7,500만원이 감액된 1억8,000만원 편성하였음.

2012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받은 마을기업은 2년차 3개 마을기업과 1년차 1개 마을기업이 있었고, 2013년도에는 2년차 1개 마을기업 외에 3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음.

서울시 선정 마을공동체기업은 2012년10월 서울시 방침에 따른 매칭사업(80%, 20%)에 대응투자하기로 계획 수립하였으나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서 산출기초란에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 3”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 진단 희망자에게 실시하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시비매칭(시 70%, 구 30%)사업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2012년에는 1차 검진희망자 92명 중 71명이 11월 초 마포구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1차 검진자의 73.2%에 해당하는 52명이 2차 검진 대상자로 확인되어 노인의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또한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건강관리사업과 허약노인 집중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사업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유질환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0 만0-2세, 만3-4세, 장애아동, 영아(기본) 등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9%에 해당하는 43억442만원을 증액한 192억459만 3천원 편성하였음.

당초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 0-2세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12월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0-2세 보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와 정부, 지자체간 협의 및 준비기간, 예산부족 등으로 2012년도에 정부와 지자체가 제때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2012년3월부터 0-2세 전계층 보육 시행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0억9,043만9천원이 증액된 사업비 159억9,0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11월14일 현재 3차 변경내시액 242억8,063만3천원이 시달되어 우리구가 부담해야할 구비가 50억9,893만3천원으로 늘어나 부족분을 2012년도 추경편성이나 예비비 집행으로 충당해야 하고, 증액된 국비나 시비가 제때에 시달되지 않아 은행에서 대납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

당초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국고보조) 가내시액(국비 30%, 시비 49%, 구비 21%)은 총 203억4,800만원으로 국비 61억464만2천원, 시비 99억7,091만5천원, 구비 42억

7,300만원이었으나 구비 반영분에 대해서는 서울지구청장협의회에서 2012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반영하기로 합의해 구비를 31억2,903만6천원만 반영하여 총 사업비가 192억459만3천원으로 감소하게 되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9월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0-2세 전계층 보육비 지원을 폐기하는 대신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2013년도 소요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지난 11월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 계층 보육비 지원으로 수정 의결한바 있고, 예결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음. 또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보육료에 대한 국비 분담률 50% 상향조정 등을 요구하면서 구비 예산반영분을 2012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어 보육료 관련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2013년도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65억290만원도 당초 서울시가내시액은 80억1,700만원으로 매칭에 따른 분담금을 보면, 국비 24억510만원, 시비 39억2,833만원, 구비 16억8,357만원이었으나 구비를 2012년도 본예산 수준에서 반영하기로 서울지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함에 따라 구비 1억6,947만원만 편성하여 총 사업비가 65억290만원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예산안도 향후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이 있어야 할 것임.

0 여성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주는 도시공간 조성정책 등에

양성(남녀)평등적 관점을 반영,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로 54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음.

2012년7월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위원회 여성비율 40% 확대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돌봄과 소통의 마을공동체 형성 및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행복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2년11월21일 서울시 마포구와 서대문구, 대구 수성구 및 경북 포항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가족부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되었음. 이로써 2009년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지정된 여성친화도시 30개소를 합하여 전국적으로 지정된 여성친화도시는 39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음.

여성가족부는 2013년 초 이번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친화도시 협약식”을 갖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정책 컨설팅 실시 및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추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0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3% 증액된 34억8,466만9천원 편성하였음.

2013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 신규로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되고, 서울시에서 급식단가를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공립초의 경우 전년도 2,580원 대비 11.6% 인상된 2,880원으로, 중 1-2학년은 전년도 3,250원 대비 18.1% 인상된 3,840원

으로 확정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하였고,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공립초의 경우 3,560원으로, 중1-2학년은 3,940원으로 책정하여 학교급식지원비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관련 기관 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9종)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2년도말 조성액은 309억8,885만8천원, 2013년도 수입액 42억9,087만5천원, 지출액은 66억2,553만3천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286억5,420만원이 되겠음.

기 금 명	2012년도 말 현 재 액 ①	2013년도 기금운용		2013년도말 현 재 액 ④=①+②-③	증 감 ④-①
		수 입②	지 출③		
계	30,988,858	4,290,875	6,625,533	28,654,200	△2,334,65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1,117,495	858,110	600,840	1,374,765	257,270
자활기금	1,389,730	78,565	27,000	1,441,295	51,565
노인복지기금	701,751	29,701	29,420	702,032	281
여성발전기금	1,910,629	81,678	81,678	1,910,629	0
장학기금	8,018,188	335,627	353,036	8,000,779	△17,409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682,245	133,792	48,280	767,757	85,512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483,578	178,306	127,960	1,533,924	50,34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604,447	22,440	420	626,467	22,020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15,080,795	2,572,656	5,356,899	12,296,552	△2,784,24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3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의회에 제출 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금운용·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지출계획 세부사업란 민간경상보조의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금”에 대한 사업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